

의안번호	2207563
의 퇴 인	김윤 의원
회 답 일	2025. 2. 13.
추 계 번호	25C02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확대하며 지원 시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9조 8,402억원 (연평균 1조 9,680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4,630	13,043	13,169	30,841	6,168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214	15,374	16,765	18,162	10,046	67,561	13,512
추가재정소요 소계	7,214	15,374	21,395	31,205	23,215	98,402	19,6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대체복무요원 포함)에게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100%를 적용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대체복무요원 미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1) 안 제3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 장기체납자, 저연금자, 무연금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해당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연금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안 제3조의3에서 명시한 정보를 포함한 국민연금 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종합운영계획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자녀를 얻은 날 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24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무제한)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 으로 확대하고,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인정소득의 상한선을 두지 않음	의무규정
4	안 제100조의4(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실직 등에 따라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제기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 로 확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3	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9조의2 및 제100조의4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19조의2)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자들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현행 인정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대상자들의 수와 그들의 소득액, 대상자가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현재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인정소득이 7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수와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을 알 수 없음
- 또한, 개정안은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여부 변동 및 소득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인별 평균 지원 기간 및 최대 2년 지원 달성 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

○ (안 제100조의4)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수와 이들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정보, 대상자가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²⁾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특정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수를 알 수 없음

* 참고로, 현행 지역가입자 연구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인면서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재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

- 또한, 개정안은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및 신규 지역가입자 각 개인의 향후 소득 변동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인별 평균 지원 기간 및 최대 36개월 지원 달성 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

2)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 중에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자(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만 추계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참고로 안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100조의4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향후 지급받는 연금급여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급여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9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³⁾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현역병⁴⁾,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군 복무자와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병역 입대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대체복무 포함)으로 입대한 사람(31.9만명⁵⁾)의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9%)을 산출하여 적용

3)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4)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5) 병무청 제출자료

- (지역연금 가입률) 2021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지역연금 가입자 수 (2.9만명) 비율(7.3%)을 적용하여 지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⁶⁾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9.0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대체복무 포함)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⁷⁾에서 도출된 A값의 100%에 보험료율(9%)을 적용

[표 3]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연금 A값 추정치(천원, A)	3,348	3,479	3,621	3,769	3,924
보험료율(% , B)	9	9	9	9	9
보험료 지원 단가(천원, $A \times 100\% \times B$)	301	313	326	339	353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7)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제도 변경에 따른 총재정소요이며 2028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8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9개월의 지원 기간 중 7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6	202,888	202,888 (7개월)	202,888 (12개월)				
2027	201,831		201,831 (7개월)	201,831 (12개월)			
2028	186,930			186,930 (7개월)	186,930 (12개월)		
2029	182,452				182,452 (7개월)	182,452 (12개월)	
2030	189,114					189,114 (7개월)	189,114 (12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며, 지원기간의 소득인정액을 국민연금 A값의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조 841억원(연평균 6,168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4,630	13,043	13,169	30,841	6,1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⁸⁾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8.0%)을 차감하여 활용
 -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출산 순위별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동일하므로 출산 순위를 고려하지 않음

[표 6]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인구	217,079	227,833	237,996	247,279	255,406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199,713	209,606	218,956	227,497	234,97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⁹⁾에서 도출된 A값의 100%에 보험료율(9%)을 적용

[표 7]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연금 A값 추정치(천원, A)	3,348	3,479	3,621	3,769	3,924
보험료율 안(% , B)	9	9	9	9	9
보험료 지원 단가(천원, A×B)	301	313	326	339	353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8)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9)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첫째부터 자녀당 24개월)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조 7,561억원(연평균 1조 3,512억원)으로 추계됨

[표 8]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214	15,374	16,765	18,162	10,046	67,561	13,5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안 제18조·제19조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급여지급액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